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1

발의연월일: 2020. 07. 15.

발 의 자:최종윤·노웅래·윤준병

박성준 • 인재근 • 이인영

양정숙 • 이병훈 • 주철현

양이원영 · 윤영찬 · 송옥주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초점이 있고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규정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 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 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법」"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공인중 개사법」"으로,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 물의"를 "매매·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물을 매매·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생 략)	공개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인중개사법」</u> 에 따른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공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인중개사법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	<u>매매·임대하거나 이</u>
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를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u>건축물의</u> 에너지 평가서를 <u>확</u>	<u>건축물철</u>
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	부하여야 한다.
<u>다</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